新年特輯

工業所有權制度 및 관련

2月 16日부터 特許料·登錄料와

工業所有權制度 및 관련 法律은 새해를 맞아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業工所有權의 出願料를 비롯한審査請求料·出願公告料·登錄料등特許手數料가 평균 80%引上됐다.

이는 정부가 구랍 31日「特許法·實用新案法·意匠法 및 商標法에 의한 特許料·登錄料와 手數料의 징수규칙중 改正令」을 改正·公布함으로써 밝혀졌다.

정부는「特許行政近代化의 조기 달성과 特許管理特別會計法의 제정(1986.12.31, 法律 第3889號)에 의해 特許廳의 독립채산제 확립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 및 외국의 요금수준을 고려하여 特許權·商標權등의 權利範圍에 상응하는 特許料 및 登錄料등을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구랍 31日 商工部令 第729號로 改正公布된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 수익자부담의 원칙 및 외국의 요금수준을 고려하여 特許料·登錄料 및 手數料를 종전보다 평균 80%引上조정함(第1條 내지 第6條 및 第8條)

㉯ 종전에는 特許·實用新案登錄出願의 審査請求時에만 받던 請求範圍의 項別요금을 特許料 및 實用新案登錄料의 납부시에도 받도록함(第1條 및 第2條)

㉰ 特許權 존속기간이 종전의 12年에서 15年내지 20年으로 연장됨에 따라 그 연장기간에 따른 特許料·特許出願料·特許審査請求料및 特許出願公告料를 중점적으로 引上함(第1條 및 第6條 第1號 내지 第3號)

㉱ 特許權 및 實用新案權에 대한 審判 및 抗告 審判請求時에 請求範

상공부령 제729호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징수규칙중 개정령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내지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특허료) 특허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는 다음과 같다.

특허권존속기간의 기산일로부터의 연수	금 액
제1년 내지 제3년	매년 15,000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1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10,000원씩을 가산한 금액
제4년 내지 제6년	매년 28,000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1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항 마다 20,000원씩을 가산한 금액
제7년 내지 제9년	매년 56,000원에 청구범위 항이 1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30,000원씩을 가산한 금액
제10년 내지 제12년	매년 112,000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1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40,000원씩을 가산한 금액
제13년 내지 제15년	매년 224,000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1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50,000원씩을 가산한 금액
제16년 내지 제20년	매년 448,000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1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60,000원씩을 가산한 금액

法律 새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手數料의 징수규칙 正…納付書式도 正시행

圍의 項이 1項을 초과할 때마다 特許權의 경우에는 2만원씩, 實用新案權의 경우에는 1만원씩을 각각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함 (第6條第4號 및 第5號).

㈑ 特許權·實用新案權 및 意匠權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特許權·實用新案權 및 意匠權에 대한 통상실시권설정을 위한 재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手數料를 정함(第6條 第10號)

㈒ 特許·實用新案·意匠 및 商標登錄을 위한 出願과 特許權·實用新案權·意匠權 및 商標權에 대한 審判·抗告審判의 청구후 당해 출원서 및 청구서의 흠결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手數料를 정함(第6條第12號)등이다.

引上된 手數料의 내용을 살펴보면, 特許出願料는 8천원에서 1만 5천원으로, 商標出願料는 2만 3천원에서 4만 2천원으로, 特許審判請求料는 3만원에서 5만 6천원으로, 特許出願公告料는 1만 2천원에서 2만 3천원으로, 審判請求料는 2만원에서 3만 6천원으로, PCT送達料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각각 引上했다.

이와함께 特許廳은 生活保護法에 의한 보호대상자 또는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대학의 재학생이 發明 또는 考案을 하여 特許法·實用新案法 또는 意匠法에 의한 出願을 하는 경우에 그 出願에 대한 出願料·審査請求料·出願公告料와 최초 3年分의 特許料·實用新案登錄料·意匠登錄料 또는 유사의장 登錄料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改正·公布된 내용 全文을 소개한다. <編輯者 註>

제 2 조 (실용신안등록료) 실용신안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료는 다음과 같다.

실용신안권존속기간의 기산일로부터의 연수	금 액
제 1 년 내지 제 3 년	매년 10,500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1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5,000원씩을 가산한 금액
제 4 년 내지 제 6 년	매년 21,000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1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10,000원씩을 가산한 금액
제 7 년 내지 제 9 년	매년 41,000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1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15,000원씩을 가산한 금액
제10년	50,000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1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20,000원씩을 가산한 금액

제 3 조 (의장 및 유사의장등록료) 의장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 및 유사의장등록료는 다음과 같다.

의장권 또는 유사의장권존속 기간의 기산일로부터의 연수	금 액
제 1 년 내지 제 3 년	매년 10,500원
제 7 년 내지 제 8 년	매년 21,000원
제 7 년 및 제 8 년	매년 33,000원

제 4 조 본문단서중 "10개"를"5개"로 하고, "2,000원"을 "10,000원"으로 하며, 동조제1호 및 제3호중 "매건 78,000원"을 각각 "매건 141,000원"으로 하며, 동조 제2호중 "매건 78,000원"을 "매건 200,000원"으로 한다.

제 5 조 제1호가목중 "매건 5,000원"을"매건 9,000원"으로 하고, 동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상속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특허권	매건 36,000원
실용신안권	매건 27,000원
의장권 또는 유사의장권	매건 27,000원

상표권·서어비스표권·단체표장권·연합상표권·연합서어비스표권 또는 연합단체표장권

매건 76,000원

제 5 조 제2호중 "통상사용권"을 "사용권"으로, "매건 12,000원"을 "매건 22,000원"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통상사용권"을 "사용권"으로 한다.

제 5 조 제4호가목중 "매건 2,000원"을 "매건 9,000원"으로 하고, 동호나목중 "매건 3,000원"을 "매건 22,000원"으로 한다.

제 5 조 제5호중 "매건 100,000"을 "매건 180,000원"으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정상품·지정서어비스 또는 지정업무가 각각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상품·서어비스 또는 업무마다 각각 10,000원씩을가산한다.

제5조제6호중 "매건 2,000원"을 "매건 3,000원"으로하고, 동조제7호중 "매건 5,000원"을 "매건 9,000원"으로 하며, 동조제8호중 "매건 3,000원"을 "매건 5,000원"으로 하고, 동조제9호중 "매건 8,000원"을 "매건 14,000원"으로 한다.

제 6 조 제1호가목중 "매건 8,000원"을 "매건 15,000"원으로 하고, 동호나목중 "매건 6,000원"을 "매건 10,000원"으로 하며, 동호다목중 "매건 23,000원"을 "매건 41,000원"으로 하고, 동호라목 내지 바목을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상표·서어비스표·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의 등록출원 매건 42,000원

다만, 지정상품·지정서어비스 또는 지정업무가 각각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상품·서어비스 또는 업무마다 5,000원씩을 가산한다.

마. 연합상표·연합서어비스표·연합단체표장 또는 연합업무표장의 등록출원 매건 42,000원

다만, 지정상품·지정서어비스 또는 지정업무가 각각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상품·서어비스 또는 업무마다 5,000원씩을 가산한다.

바. 상표권·서어비스표권·단체표장권·업무표장권 연합상표권연합서어비스표권·연합단체표장권 또는 연합업무표장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매건 60,000원

다만, 지정상품·지정서어비스 또는 지정업무가 각각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상품·서어비스 또는업무마다 5,000원씩을 가산한다.

사. 지정상품·지정서어비스 또는 지정업무의 추가 등록출원 매건 42,000원

다만, 지정상품·지정서어비스 또는 지정업무가 각각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상품·서어비스 또는 업무마다 5,000원씩을 가산한다.

제 6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심사청구료

특허출원 매건 56,000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매건 26,000원

다만, 최초 출원서의 청구범위 및 보정서의 청구범위를 대상으로 하여 청구범위의 항이 1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항마다 20,000원(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10,000원)씩을 가산하되, 항수의 계산방법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제 6 조 제3호가목중 "매건 12,000원"을 "매건 23,000원"으로 하고, 동가목단서중 "3,000원씩"을 "5,000원씩"으로 하며, 동호나목중 "매건 12,000원"을 "매건 21,000원"으로 하고, 동나목단서중 "3,000원씩"을 "5,000원씩"으로 한다.

제 6 조 제4호본문 및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심판청구료·다만, 특허권의 경우 청구범위의 항이 1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항마다 20,000원씩을, 실용신안권의 경우에는 청구범위의 항이 1항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10,000원씩을 가산한다.

제 6 조 제4호가목 내지 차목중 "매건 20,000원"을 각각 "매건 36,000원"으로 하고, 동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매건 36,000원

제 6 조 제5호본문 및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항고심판청구료. 다만, 특허권의 경우 청구범위의 항이 1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항마다 20,000원씩을, 실용신안권의 경우에는 청구범위의 항이 1항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10,000원씩을 가산한다.

제 6 조 제5호가목 내지 카목중 "매건 40,000원"을 각각 "매건 72,000원"으로 하고, 동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사용권등록의 취소심판 매건 72,000원

제 6 조 제6호중 "매건 2,000원"을 매건 5,000원"으로 하고, 동조제7호중 "매건 10,000원"을 "매건 18,000원"으로 하며, 동조제8호중 "매건 1,000원"을 "매건 1,500원"으로 한다.

제 6 조 제9호 내지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출원인명의변경신청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9,000원
   나. 상속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매건 20,000원
10. 통상실시권설정재정신청료 매건 20,000원
11. 지정상품등의 보정료
    상표·서어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연합상표·연합서어비스표·연합단체표장 또는 연합업무표장의 등록출원·상표권·서어비스표권·단체표장권·업무표장권·연합상표권·연합서어비스표권·연합단체표장권 또는 연합업무표장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대하여 지정상품·지정서어비스 또는 지정업무의 보정이 있는 경우에 그 보정수를 최초출원의 지정상품·지정서어비스 또는 지정업무의 수와 합산하여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상품·서어비스 또는 업무마다 5,000원씩을 납부하여야 한다.
12. 기타 보정료
    특허법 제10조의 2·제103조·제126조·제134조, 실용신안법 제29조, 의장법 제13조의 2·제53조및 상표법 제14조의 2·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료 매건 2,000원
13. 기간해태변제신청료 매건 13,000원
14. 의장비밀보장의 청구료 매건 18,000원
15. 법정기간·지정기간 또는 기일변경신청료 매건 20,000원
16. 비용액결정의 청구료 매건 500원
17. 집행문 정본의 청구료 매건 300원
18.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의장등록증·유사의장등록증·상표등록증, 서어비스표등록증·단체표장등록증·업무표장등록증·연합상표등록증·연합서어비스표등록증·연합단체표장등록증 또는 연합업무표장등록증의 재교부신청 또는 그 사본의 교부신청료 매건 5,000원
19. 각종서류의 등본·초본 또는 증명의 신청료 매건 300원
    다만, 복사를 요하는 첨부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1면 마다 200원씩을 가산한다.
20. 서류의 사본 교부신청료 매 1면 200원
21. 공보(마이크로필름을 포함한다) 또는 도서의 복사신청료 매 1면 100원
22. 공보(마이크로필름을 포함한다) 또는 도서외의 열람신청료 매건매회 200원
23. 특허법시행규칙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 서류의 송달신청료 매건 10,000원

제 7 조 제10항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를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또는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이"로 하고, 동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는 별지서식에 의하여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제1항제1호중 "매건 30,000원"을"매건 40,000원"으로 한다.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상공부령 제730호에 의거 2월 16일부터 시행〉

②(납부된 등록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납부된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는 이 규칙에 의하여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③(특허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특허(등록) 사정 또는 등록심결등본이 발송된 출원에 대한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의장등록료 또는 유사의장등록료는 제1조 내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상표등록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등록사정 또는 등록심결등본이 발송된 상표·서어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연합상표·연합서어비스표·연합단체표장 또는 연합업무표장의 등록료, 지정상품·지정서어비스 또는 지정업무의 추가등록료, 상표권·서어비스표권·단체표장권·업무표장권·연합상표권·연합서어비스표권·연합단체표장권 또는 연합업무표장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는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심사청구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심사청구된 출원에 대한 심사청구료와 출원공고의 결정등본이 발송된 출원에 대한 출원공고료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제 1 조(특허료) 특허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는 다음과 같다.

특허권존속기간의 기산일로부터의 연수	금 액
제1년 내지 제3년	매년 8,000원
제4년 내지 제6년	매년 15,000원
제7년 내지 제9년	매년 30,000원
제10년 내지 제12년	매년 39,000원

제2조(실용신안등록료) 실용신안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료는 다음과 같다.

실용신안권존속기간의 기산일로부터의 연수	금 액
제1년 내지 제3년	매년 6,000원
제4년 내지 제6년	매년 12,000원
제7년 내지 제9년	매년 22,000원

개 정

제 1 조(특허료)·····

·····

특허권존속기간의 기산일로부터의연수	금 액
제1년 내지 제3년	매년, 15,000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1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 10,000다원씩을 가산한 금액
제4년 내지 제6년	매년, 28,000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1항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20,000원씩을 가산한 금액
제7년 내지 제9년	매년, 56,000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1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30,000원씩을 가산한 금액
제10년 내지 제12년	매년, 112,000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1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40,000원씩을 가산한 금액
제13년 내지 제15년	매년 224,000원에 청구 범위의 항이 1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50,000원씩을 가산한 금액
제16년 내지 제20년	매년 448,000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1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60,000원씩을 가산한 금액

제2조(실용신안등록료) ·····

·····

실용신안권존속기간의 기산일로부터의 연수	금 액
제1년내지 제3년	매년 10,500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1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하는 1항마다 5,000원씩을 가산한 금액
제4년 내지 제6년	매년 21,000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1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10,000원씩을 가산한 금액
제7년 내지 제9년	매년 41,000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1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

제10년	27,000원

제3조(의장 및 유사의장등록료) 의장법 제42조의규정에 의한 의장 및 유사의장등록료는 다음과 같다.

의장권또는유사의장권존속기간의 기산일로부터의 연수	금 액
제1년 내지 제3년	매년 6,000원
제4년 내지 제6년	매년 12,000원
제7년 내지 제8년	매년 17,000원

제4조(상표·서어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연합상표의 등록료 및 지정상품 추가등록료) 상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등록에 있어서 지정상품·지정서어비스 또는 지정업무가 각각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상품서어비스 또는 업무마다 2,000원씩을 가산한다.

1. 상표·서어비스표·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 매건 78,000원
2. 연합상표·연합서어비스표·연합단체표장 또는 연합업무표장 매건 78,000원
3. 지정상품추가·지정서어비스추가 또는 지정업무추가 매건 78,000원

제5조(기타등록료) 특허·실용신안·의장·유사의장·상표·서어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연합상표·연합서어비스표·연합단체표장 또는 연합업무표장에 관한 기타의 등록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유사의장권·상표권·서어비스표권·단체표장권·연합상표·권 연합서어비스표권 또는 연합단체표장권의 이전등록
   가.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5,000원
   나. 상속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특허권 매건 20,000원
      실용신안권 매권 15,000원
      의장권 또는 유사의장권 매건 15,000원
      상표권·서어비스표권·단체표장권·연합상표권·연합서어비스표권 또는 연합단체표장권

제10년	항마다 15,000원씩을 가산한 금액 50,000원에 청구범위의 항이 1항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20,000원씩을 가산한 금액

제3조(의장 및 유사의장등록료) ……
……

의장권 또는 유사의장권존속기간의 기산일로부터의 연수	금 액
제1년 내지 제3년	매년 10,500원
제4년 내지 제6년	매년 21,000원
제7년 내지 제8년	매년 33,000원

제4조(상표·서어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연합상표의 등록료 및 지정상품 추가등록료) ……
……
……
…… 5개 ……
……
……10,000원……
1. ……
매건 141,000원
2. ……
…… 매건 200,000원
3. ……
…… 매건 141,000원

제5조(기타등록료) ……
……
……
……
1. ……
……
……
……
가. …… 매건 9,000원
나. ……
…… 매건 36,000원
…… 매건 27,000원
…… 매건 27,000원
……
……

매건 42,000원

2. 실시권 및 통상사용권의 설정 또는 그 보존등록 매건 12,000원

3.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유사의장권·상표권·서어비스표권·단체표장권·연합상표권·연합서어비스표권·연합단체표장권 및 동 실시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 또는 처분의 제한등록 채권금액의 1,000분의 5

4. 제2호 및 제3호의 권리의 이전등록

가. 상속에 의한경우

매건 2,000원

나. 상속이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매건 3,000원

5. 상표권·서어비스표권·단체표장권·업무표장권·연합상표권·연합서어비스표권·연합단체표장권 또는 연합업무표장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

매건 100,000.

<단서신설>

6. 등록사항의 갱정·변경(행정구역 또는 지번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취소·말소또는 회복등록 매건 2,000원

7. 가등록 매건 5,000원

8. 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선임 또는 그 변경등록

매건 3,000원

9. 신탁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

매건 8,000원

제6조(수수료)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의장등록출원·유사의장등록출원·상표·서어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연합상표·연합서어비스표·연합단체표장 또는 연합업무표장의 등록출원, 지정상품, 지정서어비스 또는 지정업무의 추가등록출원 및 기타의 청구 또는 신청수수료는 다음각호와 같다.

1. 출원료

가. 특허출원 매건 8,000원

나. 실용신안등록출원 매건 6,000원

다. 의장등록출원 또는 유사의장 등록출원

매건 23,000원

라. 상표·서어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연합상표·연합서어비스표·연합단체표장 또는 연합업무표장의 등록출원 매건 23,000원

매건 76,000원

2. ……사용권 ……

…… 매건 22,000원

3. ……

……

……

……사용권……

……

……

4. ……

가. ……

매건 9,000원

. . ……

매건 22,000원

5. ……

……

……

매건 180,000원

다만, 지정상품·지정서어비스 또는 지정업무가 각각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상품·서어비스 또는 업무마다 10,000원씩을 가산한다.

6. ……

……

…… 매건 3,000원

7. …… 매건 9,000원

8. ……

매건 5,000원

9. ……

매건 14,000원

제6조(수수료) ……

……

……

……

……

……

……

1. ……

가. …… 매건 15,000원

나. …… 매건 10,000원

. . ……

매건 41,000원

라. 상표·서어비스표·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의 등록출원

매건 42,000원

다만, 지정상품·지정서어비스 또는 지정업무가 각각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상품·서어비스 또는 업무마다 2,000원씩을 가산한다.

<신 설>

마. 상표권·서어비스표권·단체표장권·업무표장권·연합상표권·연 '서어비스표권·연합단체표장권 또는 연합업무표장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 출원 매건 23,000원
다만, 지정상품·지정서어비스 또는 지정업무가 각각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상품·서어비스 또는 업무마다 2,000원씩을 가산한다.

바. 지정상품·지정서어비스 또는 지정업무의 추가등록출원 매건 23,000원
다만, 지정상품·지정서어비스 또는 지정업무가 각각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상품·서어비스 또는 업무마다 2,000원씩을 가산한다.

2. 심사청구료
특허출원 매건 30,000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매건15,000원
다만, 최초출원서의 청구범위 및 보정서의 청구범위를 대상으로하여 독립청구범위의 항이 1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항마다 8,000원씩, 종속청구범위의 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에 포함된 항수마다 2,000원(특허출원의 경우에는 4,000원)씩을 가산하되, 항수의 계산방법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3. 출원공고료
가. 특허출원 매건 12,000원 다만, 당해 특허출원공고가 게재된 특허공보(공고)의 면수가 5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면마다 3,000원씩을 가산한다.

나. 실용신안등록출원 매건 12,000원
다만, 당해 실용신안등록 출원공고가 게재된 실용신안공보(공고)의 면수가 5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면마다 3,000원씩을 가산한다.

……
…… 5개……
…… 5,000원
……

마. 연합상표·연합서어비스표·연합단체표장 또는 연합업무표장의 등록출원 매건 42,000원 다만, 지정상품·지정서어비스 또는 지정업무가 각각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상품·서어비스 또는 업무마다 5,000원씩을 가산한다.

바. ……
……
……
…… 매건 60,000원
……
…… 5개……
…… 5,000원…
……
……
…… 매건 42,000원
……
…… 5개……
…… 5,000원…
……

2. ……
…… 매건 56,000원
…… 매건 26,000
다만, 최초출원서의 청구범위 및 보정서의 청구범위를 대상으로하여 청구범위의 항이 1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항마다 20,000원(실용신안 등록출원의 경우에는 10,000원)씩을 가산하되, 항수의 계산방법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
……

3. ……
가. ……매건 23,000원……
……
……
…… 5,000원
나. …… 매건 21,000원
……
……
…… 5,000원…
……

4. 심판청구료

<단서신설>

가. 권리범위확인심판	매건 20,000원
나. 무효심판	매건 20,000원
다. 취소심판	매건 20,000원
라. 재심청구	매건 20,000원
마. 통상실시권허여심판	매건 20,000원
바. 정정허가심판	매건 20,000원
사. 분할허가심판	매건 20,000원
아. 정정허가의 무효심판	매건 20,000원
자. 분할허가의 무효심판	매건 20,000원
차. 취소처분신청 또는 통상실시권 허여처분신청	매건 20,000원

<신 설>

5. 항고심판청구료

<단서신설>

가. 권리범위확인심판	매건 40,000원
나. 무효심판	매건 40,000원
다. 취소심판	매건 40,000원
라. 출원의 거절사정 불복심판	매건 40,000원
마. 재심청구	매건 40,000원
바.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매건 40,000원
사. 정정허가심판	매건 40,000원
아. 분할허가심판	매건 40,000원
자. 정정허가의 무효심판	매건 40,000원
차. 분할허가의 무효심판	매건 40,000원
카. 즉시항고	매건 40,000원

<신 설>

6. 심사 또는 심판에 대한 이의신청료 매건 2,000원

7. 심판·항고심판 또는 재심청구의 참가신청료 매건 10,000원

8. 심판관의 기피신청료 매건 1,000원

9. 출원인명의변경신청료 매건 5,000원

4. 심판청구료

다만, 특허권의 경우 청구범위의 항이 1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항마다 20,000원씩을, 실용신안권의 경우에는 청구범위의 항이 1항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10,000원씩을 가산한다.

가. 권리범위확인심판	매건 36,000원
나. 무효심판	매건 36,000원
다. 취소심판	매건 36,000원
라. 재심청구	매건 36,000원
마. 통상실시권허여심판	매건 36,000원
바. 정정허가심판	매건 36,000원
사. 분할허가심판	매건 36,000원
아. 정정허가의 무효심판	매건 36,000원
자. 분할허가의 무효심판	매건 36,000원
차. 취소처분신청 또는 통상실시권 허여처분신청	매건 36,000원
카. 사용권등록의 취소심판	매건 36,000원

5. 항고심판청구료

다만, 특허권의 경우 청구범위의 항이 1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항마다 20,000원씩을, 실용신안권의 경우에는 청구범위의 항이 1항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1항마다 10,000원씩을 가산한다.

가. 권리범위확인심판	매건 72,000원
나. 무효심판	매건 72,000원
다. 취소심판	매건 72,000원
라. 출원의 거절사정 불복심판	매건 72,000원
마. 재심청구	매건 72,000원
바.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매건 72,000원
사. 정정허가심판	매건 72,000원
아. 분할허가심판	매건 72,000원
자. 정정허가의 무효심판	매건 72,000원
차. 분할허가의 무효심판	매건 72,000원
카. 즉시항고	매건 72,000원
타. 사용권등록의 취소심판	매건 72,000원

6. ..... 매건 5,000원

7. ..... 매건 18,000원

8. ..... 매건 1,500원

9. .....

가. 상속에 의한 경우 매건 9,000원

<신 설>

10. 지정상품등의 보정료

상표·서어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연합상표·연합서어비스표·연합단체표장 또는 연합업무표장의 등록출원·상표권·서어비스표권·단체표장권·업무표장권·연합상표권·연합서어비스표권·연합단체표장권·또는 연합업무표장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대하여 지정상품·지정서어비스 또는 지정업무의 보정이 있는 경우에 그 보정수를 최초출원의 지정상품·지정서어비스 또는 지정업무의 수와 합산하여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상품·서어비스 또는 업무마다 2,000원씩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11. 기간해태면제신청료 매건 7,000원
12. 의장비밀보장의 청구료 매건 10,000원
13.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 연장신청료 매건 7,000원
14. 비용액결정의 청구료 매건 400원
15. 집행문 정본의 청구료 매건 200원
16.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의장등록증·유사의장등록증·상표등록증·서어비스표등록증·단체표장등록증·업무표장등록증·연합상표등록증·연합서어비스표등록증·연합단체표장등록증·또는 연합업무표장등록증의 재교부 신청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신청료 매건 3,000원
17. 각종 증명의 신청료 매건 200원

다만, 복사를 요하는 첨부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1면마다 50원씩을 가산한다.

18. 서류의 등본·초본 또는 사본의 교부신청료 매 1면 200원
19. 공보(마이크로필름을 포함한다) 또는 도서의 복사 신청료 매 1면 100원
20. 공보(마이크로필름을 포함한다) 또는 도서의 열람신청료 매건매회 200원
21. 특허법시행규칙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서류의 송달신청료 매건 6,000원

나. 상속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매건 20,000원

10. 통상실시권설정재정신청료 매건 20,000원
11. 지정상품등의 보정료 ..... 5개 5,000원
12. 기타보정료

특허법 제10조의2·제103조·제126조·제134조, 실용신안법 제29조, 의장법 제13조의2·제53조 및 상표법 제14조의2·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료 매건 2,000원

13. ..... 매건 13,000원
14. ..... 매건 18,000원
15. 법정기간, 지정기간 또는 기일 변경신청료 매건 20,000원
16. ..... 매건 500원
17. ..... 매건 300원
18. ..... 매건5,000원
19. 각종 서류의 등본·초본 또는 증명의 신청료 매건 300원 200원
20. 서류의 사본 교부신청료 .....
21. (현행 제19호와 같음).....
22. (현행 제20호와 같음).....
23. .....매건 10,000원

제7조(납부방법등) ①—⑨ (생략) ⑩특허청장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발명 또는 고안(의장고안을 포함한다)을 하여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의장법에 의한 출원을 하는 경우에 그 출원에 대한 출원료·심사청구료·출원공고료와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의장등록료 또는 유사의장등록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⑪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15호 내지 제20호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납부방법등) ①—⑨ 현행과 같음. ⑩……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또는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이…… …… …… …… ⑪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는 별지서식에 의하여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국제출원수수료) ①특허법 제157조의 8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송달료 매건 30,000원	제8조(국제출원수수료) …… …… …… 1. 송달료 매건 40,000원

특허청고시 제88—1호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징수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8. 1. 15

특 허 청 장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액에 관한 고시

제 1 조 (목적) 이 고시는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한 현행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이하 "특허료등"이라 한다)가 1988.1.1부터 전반적으로 상향조정되어 출원인·민원인등의 부담이 일시에 가중되어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징수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특허료등의 감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특허료등의 감액징수) ①특허료등의 징수는 상공부령 제704호(1985. 11. 20)에서 정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특허료등은 다음과 같이 징수한다.

가. 제 6 조제 4 호 카목 사용권등록의 취소심판 매건 20,000원

나. 제 6 조제 5 호 타목 사용권등록의 취소심판 매건 40,000원

다. 제 6 조제10호 통상실시권 설정 재정 신청료 매건 10,000원

라. 제 6 조제12호 기타보정료 매건 1,000원

마. 제 6 조제15호 기일변경신청료 매건 7,000원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1988.2.15까지 시행한다.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징수규칙중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허관리특별회계법의 제정(1986.12.31 법률 제3889호)에 따른 특허청의 독립채산제의 확립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징수규칙이 개정(1987.12.31 상공부령 제729호)되어 등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가 전반적으로 인상되었는바, 특허출원인등에게 등 요금인상으로 인한 일시적인 충격을 방지하여 법적안정을 기하게 하고자 일정기간동안 등 특허료등을 감액하여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 기　　타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상공부령 제730호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징수규칙중개정령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9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9 조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액의 특례) 이 규칙에 의한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를 전반적으로 인상하는 경우, 특허청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가 인상된 후 2월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한하여 동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액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제 1 조—제 8 조 (생략)	제 1 조—제 8 조(현행과 같음)
(신설)	제 9 조(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액의 특례) 이 규칙에 의한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를 전반적으로 인상하는 경우, 특허청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가 인상된후 2월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한하여 동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액할 수 있다.

(案) 發明振興事業 (內)

特許廳과 本會는 發明振興事業을 積極推進하여 登錄된 權利가 企業化됨으로써 技術革新을 바탕으로 國家產業發展에 寄與하고자 다음과 같은 事業을 展開하고 있아오니 많은 參與바랍니다.

⊙ 事業內容 ⊙

◎ 發明奬勵館의 發明品 無料展示 및 企業化 旋斡
◎ 優秀發明 試作品 製作 支援
◎ 優秀發明者, 發明有功者, 優秀特許管理 企業 選定表彰
◎ 海外 展示出品의 積極 支援
◎ 海外 出願에 對한 補助金 支援
◎ 優秀發明의 金融支援 推薦
　○ 創業資金支援 推薦(45歲 未滿)
　○ 企業化資金 投·融資 推薦
◎ 發明의 保護 및 紛爭 仲裁
◎ 發明特許品 流通販賣展示會 開催
◎ 企業과 發明人 結緣(申請接受)
　○ 姓名 및 住民登錄番號
　○ 住所 및 電話番號
　○ 公告, 登錄番號 및 日字
　○ 發明考案의 명칭을 적어 보낼 것.

※ 기타 자세한 것은 本會 發明振興部(557—1077~8)로 문의 바랍니다.

新　刊　案　內

國際工業所有權法

〈韓·美·日·英·獨·佛·파리條約·PCT·EPC 制度 총망라〉

▩ 辨理士 金　永　吉 編著
▩ 4·6倍版 : 1,664面(부록포함)
▩ 價　格 : 74,000원
▩ 관 매 처 : 韓國發明特許協會 資料販賣센터